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담당 직무별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자

③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교육시설: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면적과 시설
2. 교육장비: 탐지 및 검색 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방호 관련 장비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장소별 또는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 효율적 교육수행 방법 등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교육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강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을 때
4.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반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핵물질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가. 핵물질을 해당 사업소에서 다른 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경우

나. 핵물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는 경우

다. 핵물질을 수입하여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해당 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경우

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

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수입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까지의 국제운송방호계획
2. 핵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의 국제운송방호계획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 경유·환적을 위하여 입항시키려는 경우 : 대한민국 영역 내의 국제운송방호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

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 제1호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제18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9조의3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제4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별표 2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 및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요건

가. 등급 III 핵물질

- 1) 운송전체에 걸리는 시간, 운송수단간 및 임시저장소간의 핵물질 이동횟수와 이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할 것
- 2) 핵물질의 운송 시각과 경로 등이 운송할 때마다 다르게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

로 국제운송계획을 수립할 것

- 3) 운송종사자는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제한할 것
- 4) 운송 중 임시저장을 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게 장기간 정지할 경우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방호요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5) 운송수단이 변경될 경우에도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6) 운송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최소화하고 기밀성을 유지할 것
- 7) 외부 대응인력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8) 자연재해, 국제분쟁 등 위험이 있는 지역을 피하여 운송 경로를 설정할 것
- 9)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에 따라 운송수단 및 잠금장치의 열쇠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할 것
- 10) 인계자는 인수자에게 운송방법 및 운송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것
- 11) 운송수단 및 핵물질 운송용기에 대한 검색, 잠금 및 봉인을 철저히 할 것
- 12) 인계자와 인수자는 운송 중 지연상황을 상호간에 통보할 것
- 13) 인수자는 핵물질 수령 시 잠금장치 및 봉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14) 인계자, 인수자, 운송자 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할 것
- 15) 국제운송 전에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따른 방호조치를 점검할 것
- 16) 국제운송 시 수입국 및 경유국의 물리적방호요건을 준수할 것

나. 등급 I 및 등급 II 핵물질

- 1) 가목의 방호요건을 충족할 것
- 2) 운송대상 핵물질은 자물쇠가 채워진 차량 또는 화물용 컨테이너로 운송할 것
- 3) 핵물질을 운송할 때 물리적방호를 총괄하는 방호종사자(이하 “운송방호책임자”라 한다)는 운송지침서를 소지할 것
- 4) 운송방호책임자는 호위인력, 운송인력 및 운송통제소 간에 상호 통신체계를

유지할 것

- 5) 인계자와 인수자 간에 계약 및 협정에 따라 물리적방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 6) 핵물질 운송에 대한 방호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 7) 운송경로에서 예상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장한 인력으로 운송수단을 호위하도록 할 것
 - 8) 군·경찰 등 외부 대응인력과 통신체계를 유지할 것
 - 9) 핵물질 또는 운송수단에 대한 감시조치를 취할 것
 - 10) 운송수단 및 핵물질에 대한 방호비상시 대응을 위한 적절한 지연조치를 취할 것
 - 11) 도로운송의 경우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
 - 12) 철도운송의 경우 전용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화물과 분리해서 운송하고 잠금 조치를 취할 것
 - 13) 선박운송 및 항공운송의 경우 통제된 구역에 적재하고 잠금 및 봉인조치를 취할 것
- 다. 분실·도난 핵물질의 위치추적 및 회수조치: 제1호라목의 방호요건을 충족할 것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 단서·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 단서·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제1의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u> <u>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u> <u>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u> <u>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u> <u>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u> <u>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u> <u>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u> <u>시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u> <u>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u> <u>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7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u> <u>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u> <u>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u> <u>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u> <u>또는 기관의 직원(이하 “교육대</u> <u>상자”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u> <u>1항에 따라 담당 직무별로 신규</u> <u>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u> <u>다.</u> <u>② 제1항에 따른 담당 직무별</u> <u>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u> <u>이 구분한다.</u> <u>1.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는</u> <u>자</u> <u>2. 물리적방호 업무를 담당하지</u> <u>않는 자</u> <u>③ 담당 직무별 교육대상자의</u> <u>세부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u> <u>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제17조의3(물리적방호 교육기관</u> <u>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2항</u> <u>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u> <u>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u> <u>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1. 교육시설: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대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면적과 시설

2. 교육장비: 탐지 및 검색 장비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물리적
방호 관련 장비

3. 교육시행 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
장소별 또는 교육대상자의 담
당 직무별 효율적 교육수행
방법 등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
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
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 관련 분야의 면
허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물리적방호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람

4. 물리적방호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③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강사에 관한 세부요건,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등 교육기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운반검사 : 핵물질을 해당 사업소 외의 장소로부터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여 해당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핵물질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1. 제17조의3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2. 교육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강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을 때

4.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제18조(검사)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운반검사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핵물질에 대한 방호에 관한 검사

가. 핵물질을 해당 사업소에 서 다른 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경우

나. 핵물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반하는 경우

다. 핵물질을 수입하여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해당 사업소까지 운반하는 경우

4.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운송에 대한 물리적방호를 위한 계획(이하 “국제운송방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 핵물질을 수출하는 경우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수입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까지의 국제운송방호계획
2. 핵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는 지점부터 국내 항구 또는 공항까지의 국제운송방호계획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 경유·환적을 위하여 입항시키려는 경우 : 대한민국 영역 내의 국제운송방호계획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90일 전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 : 수출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30일 전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의 전단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 본문의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국제운송방호검사)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업무의 위탁)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4. (생략)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 제1호 :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제18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 :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업무의 위탁) ①-----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1항·제9조의3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③ (생략)

<신설>

②-----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
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해
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 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